

(2)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

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(소득법 §97의2)

현 행	개 정 안
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○ (개념)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*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*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○ (요건) ❶ & ❷ & ❸ ❶ (양도대상)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* * 분양권, 조합원입주권, 회원권 등 ❷ (적용기간)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❸ (적용제외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-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-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-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	☐ 적용기간 확대 ○ (좌 동) ❷ 5년 → 10년 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②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
(소득법 §101)

현 행	개 정 안
☐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○ (개념)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*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*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○ (요건) ❶ & ❷ & ❸ & ❹ ❶ (양도대상)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*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* §97의2① 적용받은 경우 ❷ (적용기간)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❸ (부당감소) ㉠ < ㉡ ㉠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+ 증여세액 ㉡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❹ (적용제외)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	☐ 적용기간 확대 ○ (좌 동) ❷ 5년 → 10년 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